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2대질병 보장보험(갱신형)  
사업방법서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 확인서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2 대질병 보장보험(갱신형)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4년 4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곽상현 (인)

#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2대질병 보장보험(갱신형)

###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세목

| 명칭                            | 상품유형  | 보험종목  |
|-------------------------------|-------|-------|
| 무배당 ① 하나로 연결된 2대질병 ②보장보험(갱신형) | 일반심사형 | 순수보장형 |
|                               | 간편심사형 |       |

※ 동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 또는 ②안에는 판매채널, 특정단체, 특정직업군 및 계약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 가. 일반심사형

|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 10년만기 | 최초계약 | 10년 만기   | 20세 ~ 70세 | 월납       |
|       | 갱신계약 | 10년 만기   | 30세 ~ 90세 |          |
|       |      | 100세 만기  | 91세 ~ 99세 |          |
| 20년만기 | 최초계약 | 20년 만기   | 20세 ~ 70세 | 월납       |
|       | 갱신계약 | 20년 만기   | 40세 ~ 80세 |          |
|       |      | 100세 만기  | 81세 ~ 99세 |          |

#### 나. 간편심사형

|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 10년만기 | 최초계약 | 10년 만기   | 30세 ~ 70세 | 월납       |
|       | 갱신계약 | 10년 만기   | 40세 ~ 90세 |          |
|       |      | 100세 만기  | 91세 ~ 99세 |          |
| 20년만기 | 최초계약 | 20년 만기   | 30세 ~ 70세 | 월납       |
|       | 갱신계약 | 20년 만기   | 50세 ~ 80세 |          |
|       |      | 100세 만기  | 81세 ~ 99세 |          |

###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당월분 포함)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할인하며, 최대 6개월분(당월분 포함)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최초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체결시점,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13. 갱신에 관한 사항

가.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최초계약에서 보험기간(10년만기/20년만기)과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한다. 다만, 갱신일부터 '나'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최초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한다.

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로 한다.

- 다.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 일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보험료납입기일(갱신전 계약의 납입기일을 준용한다)까지 갱신계약의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이 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 라. 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조항 제 1 항에 따라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약관의 '계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조항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마. '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 (1) 갱신일 기준 피보험자의 나이가 100 세 이상인 경우
  - (2) 약관 '계약의 소멸' 조항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 (3)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바.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 다만, 갱신전 계약의 약관이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약관을 준용한다.
- 사. 갱신계약의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은 갱신시점의 기초율(적용이율, 위험률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그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다.
- 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각 해당 내용을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 일전까지 서면,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한다.
- (1) '마'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사유
  - (2) '바'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 (3) '사'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내용
- 자.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및 유형은 갱신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4. 간편심사형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보험(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 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의적심사(이하 '일반심사'라 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 가.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이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별첨 제 2 호 '간편심사용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참조)을 활용하여 계약심사과정을 간소화 한 것을 의미한다.
- 나. 계약자가 간편심사형 가입시, 회사는 일반심사형의 경우 일반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하고,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형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며,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 제 2 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 참조)을 받는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간편심사형의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별첨 제 1 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에 대하여 음성녹음으로 대신한다.) 이 경우 비교대상인 일반심사형은 간편심사형보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비교 대상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다. 계약자가 간편심사형을 청약할 때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가 그 계약의 청약일부터 직전 3 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형에 청약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라. 간편심사형의 계약일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않은 간편심사형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약자가 일반심사 보험에 청약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가 일반심사형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간편심사형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마. '라'에 의하여 일반심사형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편심사형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일반심사형에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바. 간편심사형 가입시 회사는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별첨 제 2 호 '간편심사용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참조) 이외의 항목을 사용하여 계약심사를 하지 않는다.
- 사. 간편심사형의 청약서는 일반심사형의 청약서와 구별하기 쉽도록 별도의 청약서(별첨 제 2 호 '간편심사용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참조)를 사용한다.

## 15. 기타

-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나.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 다. 계약자의 연령증가 등에 따른 갱신시점의 예상 영업보험료를 최대 갱신 가능나이 또는 75 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개 이상을 안내한다.
- 라. 이 상품은 질병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한다.



(별첨 제 1 호)

##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

1. 이 상품의 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이 상품의 간편심사형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피보험자가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회사가 일반심사를 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이 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또는 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기간 및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심사형과의 보험료 비교(예시)

| 상품명        |             | (무)하나로 연결된 2대질병 보장보험                           |      |  |          |        |        |
|------------|-------------|--|------|--|----------|--------|--------|
| 상품구분       |             | 간편심사형  |      | 일반심사형                                      |          |        |        |
| 보장<br>내역   | 재해사망<br>보험금 | 0,000 만원                                       |      | 0,000 만원                                   |          |        |        |
| 계약<br>승낙여부 |             | 일반상품 대비 질문항목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        |
| 보험료<br>비교  |             | [기준: 남/여, 00 세, 단위: 원]                         |      |  |          |        |        |
|            |             | 보험종목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금액     | 간편심사형  | 일반심사형  |
|            |             | xxx 형  | 00 년 | 00 년                                       | x,xxx 만원 | 00,000 | 00,000 |

- 비교 대상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에도 회사는 비교대상 상품인 일반심사보험을 간편심사 상품보다 보험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함.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보험모집인 확인]

보험모집인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보험모집인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모집인 \_\_\_\_\_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보험계약자 (인/서명)

(별첨 제 2 호)

## 간편심사용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 현재 및 과거의 질병

1. 최근 3 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필요 소견 2) 수술 필요 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4) 질병 확정 진단 5) 질병 의심 소견

※ 여기서 필요 소견 또는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 외부환경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인 경우 운전 차종 (, )

1) 승용차(영업용) 2) 승용차(자가용) 3) 승합차(영업용) 4) 승합차(자가용)

5) 화물차(영업용) 6) 화물차(자가용) 7) 이륜자동차(영업용) 8) 이륜자동차(자가용)

9) 건설기계 10) 농기계 11) 기타( )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

5-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월평균소득 : 계약자 ( ) 만원

(별첨 제 3 호)

##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4 호)

##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5 호)

##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 청약서의 서식